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기업을 효율적으로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2014년도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9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2014년도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운영계획

1. 개 요

- 사람이 건강관리를 통해 성장하고, 수명이 연장(평균 17년) 되듯이, 기업 중심의 종합병원식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 중소기업의 기초 체질을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여 생존율을 제고하기 위함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이란?

◆ 종합병원식 건강검진 체계와 같이,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처방⇒치유」 방식의 3단계 『문제해결형 시스템』

기업건강 진단



- 위기관리역량진단
- 기업경영전반 분석 (기술·경영전문가)

처방전 발급



- 종합진단표 작성
- 성장로드맵·처방전 작성 (진단기관)

맞춤형 치유



- 자금, 보증, R&D, 마케팅,
- 공정혁신, 정보화, 사업전환 등 (지원기관)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체계도 >

구 분	수 행 방 법	비 고
사업공고	○ 언론,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공고	공동운영기관
▼		
신청·접수	○ 진단기관 상담·신청 * 진단기관: 지방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	기업→진단기관
▼		
진단 실시	○ 전문가 배정 및 진단 실시(최대 6MD 이내) * 필요시 공동진단 실시	진단기관 (전문가)
▼		
진단완료 및 처방전 발급	○ 진단완료 및 진단보고서 작성 ○ 처방전 작성·발급 및 위원회 심의 요청	전문가 진단기관
▼		
처방전 심의·의결	○ 맞춤형 치유사업 및 기업 개선과제 의결 ○ 진단기업 및 지원기관으로 추천서 송부	위원회 (기업건강관리팀)
▼		
맞춤형 치유신청	○ 지원기관에 추천서 제시	진단기업
▼		
맞춤형 치유	○ 유효기한 내 맞춤형 치유사업 실시 및 진단기업 자체 치유과제 이행	지원기관 진단기업
▼		
사후관리 및 성과점검	○ 진단기업 맞춤형 치유 추진실적 통보(매월 10일) ○ 진단기업 사후코칭 보고서 작성·제출 ○ 진단기업 사후관리 및 성과점검 실시	지원기관 전문가 기업건강관리팀

2. 시스템 단계별 내용

가. 기업건강 진단

1) 신청대상 및 신청접수

가) 신청대상

□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단,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 업종(별표 1) 이외의 업종, 기업건강 진단신청 제한 기업(별표 2)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은행권의 정기 또는 수시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 B등급(Fast-Track 프로그램 적용), C등급(공동 또는 단독 Work-out 선정), D등급(기업회생 절차 등)으로 분류된 구조적 경영애로 중소기업(이하 “구조적 경영애로기업”이라 함)

* B등급 :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C등급 :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

D등급 :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

☞ 신청대상 : 은행권의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 기업

- ① B등급중 ‘중소기업 Fast Track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에 따라 Fast-Track 자물협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② C등급중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채권은행자물협의회 의결을 거쳐 공동워크아웃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③ C등급 중 은행권에서 단독워크아웃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④ 자체 정상화 또는 기업회생절차 신청 권고 기업

☞ 신청제외

- ① 정상영업 중인 기업(A등급)
- ② C등급 중 공동워크아웃기업 또는 단독워크아웃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
- ③ B등급 중 Fast-Track 프로그램 공동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
- ④ D등급 중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기업

- 구조적 경영애로기업에 대해서는 진단신청 제한 기업(별표2) 중 ⑥호와 ⑧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뿌리산업(주조, 금형 등) 영위 소기업(상시근로자수 50인 이하) 및 전략 산업 창업기업(업력 7년 미만), 적합업종(제조업에 한함) 우선 지원

1, 뿌리산업 : 금형, 주조,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2, 전략산업 : ① 녹색·신성장동력, ② 부품·소재, ③ 지역전략·연고산업, ④ 지식서비스, ⑤ 문화콘텐츠, ⑥ 바이오, ⑦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 뿌리산업, 전략산업, 적합업종 해당여부는 별표3 참조

나) 신청·접수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기업건강 진단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별지 서식의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의 진단 기관에 상담·신청

*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영업시간까지 접수

☞ 기업건강 상담·신청 및 접수처(별표 4)
 ① 지방중소기업청, ②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③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④ 기술보증기금 본부평가센터 또는 기술평가센터

- (구조적 경영애로기업) 주채권은행의 추천을 받은 신청대상 기업은 별지 제1호의 진단신청서를 작성하여 추천공문과 함께 관할 소재지의 해당 진단기관에 신청
- 기업건강 관리가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 진단기관에서 기업건강 진단 신청·접수

다) 신청·접수기간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 2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10일
 - 구조적 경영애로기업 : 2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수시
 - 건강관리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2호 「건강관리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신청서」를 진단기관에 제출
- * 단, 신청일 현재 기준, 1년 이내 건강진단 완료기업, 건강진단 제한업종(예시 : 건설업, 소매업 등) 및 건강진단 제한 기업 등은 진단신청이 불가하므로 건강진단 미신청기업으로 신청

2) 진단 실시

가) 진단착수

- 진단기관은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의 진단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내부인력, 외부 전문가 1인 또는 2인이 진단을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
 - 구조적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진단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을 포함하여 10일 이내)에 진단 착수

나) 진단 실시 일수

- 진단 실시 일수는 하루 8Man-Hour 기준으로, 최대 6Man-Day 원칙이며, 진단보고서 작성일은 1MD에 포함

다) 진단비용 및 부담

- 진단비용은 30만원/1MD 원칙
- 진단비용 부담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 3MD 이내 : 진단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단기관이 부담
 - 4MD 이상 : 4MD 이상인 비용은 진단신청 기업이 부담
 - * 진단비용을 부담하는 진단신청 기업은 해당 전문가(또는 전문가의 소속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부담금을 납입

☞ 진단실시 일수별 진단신청 기업의 진단비용 부담

- * 진단일수 4MD : 3MD 비용(진단기관 부담) + 1MD 비용(진단신청 기업 부담)
- * 진단일수 5MD : 3MD 비용(진단기관 부담) + 2MD 비용(진단신청 기업 부담)
- * 진단일수 6MD : 3MD 비용(진단기관 부담) + 3MD 비용(진단신청 기업 부담)

- 구조적 경영애로기업
 - 진단예산의 범위 내에서 13MD까지 진단기관이 부담

라) 진단방법 및 내용

- (진단방법) 전문가가 진단신청 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실시 정보를 중진공 진단시스템에 입력·분석
- (진단내용)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현재 상황·위치, 경쟁력, 위기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
 - 기술·산업 분석, 핵심역량분석, 경영성과분석 등
 - 기업 성장통 원인, 위기관리역량 저해 요인 및 개선 포인트 도출
 - 기업성장로드맵 및 개선방향 제시

나. 처방전 발급

1) 진단보고서 작성

- 전문가는 '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진단보고서' 작성을 완료(진단시스템에 완료 체크)하고, 진단을 착수한 날로부터 15일(착수일은 포함하되,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 이내에 진단보고서를 진단기관에 제출
 - 전문가는 진단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진단기업 및 진단기관에 진단보고서 PT를 의무적으로 실시

<진단보고서 주요 내용>

- 1) 기업현황 : 기업개요, 연혁 및 조직, 주주현황, 공정 및 설비현황
- 2) 기업환경 : ① 기술 및 산업분석(제품공급체계, 시장규모 및 기술동향, 산업동향 등), ② 핵심역량분석(기능별 역량분석, 기업경쟁력분석, 기업성과분석 등), ③ 경영성과분석(원가경쟁력, 투자자산효율성, 매출원가 등)
- 3) 개선전략 : 기업성장로드맵 및 개선방향, 세부실천과제
- 4) 심층분석(옵션) : 재무회계, 영업마케팅, 인사조직, 생산관리, 기업특화분야 등

- * 구조적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진단을 착수한 날로부터 30일(착수일은 포함하되,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 이내에 진단보고서를 진단기관에 제출

2) 처방전 작성·발급

- 진단기관은 ‘진단보고서’와 ‘건강관리 처방 매뉴얼’을 참조하여 ‘중소기업 건강관리 처방전’을 작성·발급하고,
 - 신청·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25일(접수마감일은 포함하되,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 이내 위원회에 심의 요청
 - 진단기관은 맞춤형 치유사업에 대해 진단기업과 사전협의 실시
 - 진단기관은 소관 맞춤형 치유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 개최 이전에도 진단기업 지원 가능
 - * 구조적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신청·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45일(접수마감일은 포함하되,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 요청

다. 맞춤형 치유

1) 처방전 심의·의결

- 중소기업 건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진단기관의 처방전에 대해 심의·의결
 - 진단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원안 심의·의결 원칙
 - 처방전 중 잘못된 처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의결하거나, 추가적인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유사업을 추가하여 의결
 - 진단기업 자체 치유과제에 대해서는 맞춤형 치유사업이 완료기한 내에 개선토록 권고하는 것을 원칙
 - 다만, 개선권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 치유과제의 선행 개선조건부 맞춤형 치유사업을 의결
- 위원회는 처방전에 대한 원활한 심의·의결을 위해 진단기관 담당자, 전문가, 진단기업 관계자의 위원회 참석을 요청

2) 처방전 추천 및 맞춤형 치유

가) 처방전 추천

- 지방청(기업건강관리팀)은 진단기업, 진단기관 및 지원기관에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를 신청·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30일(접수마감일은 포함하되,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 이내 송부
 - * 구조적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지방청 또는 진단기관이 신청·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70일(접수마감일은 포함하되,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이내 송부
- 진단기업에 추천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맞춤형 치유사업, 참여 절차, 신청서식 및 유효기한, 진단기업 자체 치유과제 이행내용 등에 관하여 성실히 안내

나) 맞춤형 치유

- 진단기업은 맞춤형 치유사업의 유효기한 내에 추천서를 지원기관에 제출하고 맞춤형 치유를 신청
- 지원기관은 진단기업의 '추천서'에 따라 맞춤형 치유 실시(참고)
 - 진단기업은 지원기관이 맞춤형 치유사업의 신청서류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작성·제출
 - 지원기관이 진단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진단기업이 직접 또는 진단기관(사전에 진단기업이 동의한 경우에 한함)에서 제출

다) 사후관리

- 진단기업의 '추천서'에 기재된 유효기한 내에 치유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관의 치유사업 지원실적 및 진단기업 자체 치유과제 이행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

- 진단기업의 맞춤형 치유사업 및 진단기업의 자체 치유과제 추진 상황을 매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
 - 진단기업은 자체 치유과제에 대해 신의와 성실로써 개선기한 내에 이행 →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기업건강관리팀에 서면으로 통보
- 진단기업에 대한 성과점검을 3년간 실시하고, 매년 성과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라) 전문가 건강관리 코칭 실시

- 지방청은 전문가가 진단을 실시한 진단기업의 처방전 발급내역 및 맞춤형 치유 실시현황 정보를 기업, 전문가, 지원기관 등에 제공
 - 전문가는 진단보고서의 개선방안 및 세부실천과제에 대한 조언, 기업 자체 개선권고과제에 대한 조언 및 추가 애로과제를 발굴하는 등 진단기업에 대한 건강관리 코칭을 실시
 - 전문가는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강관리 코칭 보고서(2P 이내)를 작성하여 건강관리 홈페이지에 온라인 제출

참고

처방전에 따른 맞춤형치유 실시

치유사업	치유방식
① 자금	○ 중진공에서 진단기업의 정책자금활용계획서를 징구하고, 정책자금 대출
② 보증	○ 신보, 기보, 지역신보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진단기업이 시중은행에서 보증서부 대출 실시
③ R&D · 정보화	<p>○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은 위원회에서 심의 · 추천 이후 대면평가를 거쳐 다음 위원회에서 최종 지원대상 결정</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처방전 심의 · 추천 (지역 건강관리위원회)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대면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f2f1;"> 지원결정 (지역 건강관리위원회) </div> </div> <p>*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은 전문기관에서 결정</p> <p>○ 기술정보진흥원이 전체 생산공정의 정보화시스템(POP, MES, PDM) 구축 비용의 50% 지원</p>
④ 국내마케팅	○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진단기업의 TV · 신문홍보, 공동AS센터, 구매상담회, 마케팅교육, 휴앤쇼핑 등 국내마케팅 지원
⑤ 해외마케팅	<p>○ 수출지원센터에서 진단기업의 수출역량강화* 및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p> <p>* 2,000~3000만원 범위 내에서 외국어 포장디자인, 해외심층조사, 전자무역서비스, 해외전시회 참가, 검색엔진 상위등록 및 글로벌 브랜드 개발 등 활용</p> <p>○ 중진공에서 수출인큐베이터, 온라인 수출지원, 해외마케팅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인큐베이터] 수출사람방은 즉시 승인, 수출인큐베이터는 공실발생시 우선선정 - [온라인 수출지원] 즉시 승인 - [해외마케팅 지원] 진단기업 우선선정
⑥ 기술·경영 애로지원	<p>○ 진단기업이 선정한 컨설팅사로부터 「공정혁신 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수행계획 타당성'을 평가 · 승인</p> <p>*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공정개선, 원가절감 등 공정혁신 비용의 50~80% 지원(최대 1천만원)</p> <p>○ 비즈니스지원단에서 진단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노무, 법무 · 세무 · 회계, 기술 · 특허 등 경영애로 단기간(3일 이내)에 해소</p> <p>○ 공장설립 인 · 허가에 필수적인 측량과 환경 기능을 구축, 설계도서 및 사전환경 · 재해영향검토서 작성을 일괄대행</p>
⑦ 인력/연수	<p>○ 지방청에서 진단기업 요청 인력을 워크넷 등록, 채용박람회 및 인력지원사업(특성화고, 청년인턴제, 외국전문인력도입 등)을 통해 매칭</p> <p>*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청 담당자 지정, 1:1 집중관리</p> <p>○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안내</p>
⑧ 사업전환 및 M&A	<p>○ 중진공 지역본부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컨설팅 · 융자지원</p> <p>* 진단기관에서 공동진단 요청시 중진공에서 '사업전환계획 타당성' 평가 실시</p> <p>○ M&A 지원센터(중진공, 기보 등)에서 진단기업에 M&A 대상기업 발굴 · 매칭 및 인수자금 지원(KVIC, 중진공)</p> <p>* M&A 처방시에는 진단기업에 대한 밀체자료를 첨부하여 M&A지원센터(중진공)으로 승부</p>

<별표 1>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 업종

신청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번호)	신청대상 제외
① 제조업(10~33), 광업(05 ~08), 운수업(49~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52914) · 주차장 운영업(52915)
②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37~39)	-
③ 도매 및 소매업(45~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 담배 중개업(46102中) · 귀금속 중개업(46109) · 주류, 담배 도매업(46331, 3) ·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 귀금속 도매업(46492) · 소매업(47)
④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58~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中)
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
⑥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74~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제외) ·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中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제외)

* 상기 ① ~ ⑥ 이외의 모든 업종(예,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별표 2>

기업건강 진단신청 제한 기업

- ①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치유를 받은 회수가 4회 이상인 기업. 단, 처방전 추가 발급·추천한 경우는 횟수에서 제외
- ②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대표자 변경 등 진단기업의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③ 진단기관에서 진단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그 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④ 휴·폐업중인 기업
- ⑤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 회생인가 받은 기업 및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이업은 제외함
- ⑥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 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이업은 제외함
- ⑦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⑧ 진단 신청일 현재,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단, 진단기관의 장이 해당기업의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가.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나.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다.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연체일수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 우선지원 업종

1)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구분	신성장동력	세부분류
녹색기술산업	신재생에너지	태양전지, 연료전지,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폐자원에너지, 농산바이오매스에너지, 산림바이오매스자원화, 청정석탄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원전플랜트
	고도물처리	스마트상수도 막여과 시스템, 스마트상수도 수도기자재, 친환경 대체용수 확보를 위한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기술, 먹는샘물, 해양심층수, 지속가능 물환경을 위한 수생태계 복원기술
	LED응용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그린카, 선박·해양시스템, 첨단철도
	첨단그린도시	U-City S/W, U-City IT H/W, U-City IT 융합 H/W, ITS, GIS, 그린홈
첨단융합산업	방송통신융합	차세대 융합네트워크, 차세대 무선통신, 방송통신미디어
	IT융합시스템	IT융합, RFID/USN,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로봇응용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Ionic Liquid(IL) 소재, 나노탄소 융합소재 분야, 기능성 나노 필름 분야, 나노융합 바이오머신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자원·신소재·장기, 바이오매스유래 바이오화학제품,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첨단의료영상 진단기기, 고령친화의료기기 및 제품
	고부가식품산업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	글로벌헬스케어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교육서비스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해당사항 없음)
	콘텐츠·소프트웨어	콘텐츠, 소프트웨어
	MICE·융합관광	MICE, 생태관광

- *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진단기관 또는 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 * 녹색인증기업(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확인)은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
- *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관련 표준산업분류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지원정책>중소기업 건강관리 코너에 별도 공지

2) 뿌리산업의 범위

1. 주조산업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2413	철강관 제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131101	주철관(주조한 것)
				24113102	주철제 관련결구류
2431	철강 주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311101	회주물
				24311102	가단주물
				24311103	구상흑연주물(덕타일주물)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12101	보통강주물
				24312102	특수강주물(합금강주물)
2432	비철금속 주조업	24321	알루미늄주 물 주조업	24321100	알루미늄주물
		24322	동주물 주조업	24322100	동주물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4329100	기타 비철금속주물
2923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30101	주물주조기계

2. 금형산업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2929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4101	프레스용 금형
				29294102	플라스틱용 금형
				29294109	기타 금형
				29294901	몰드베이스
				29294909	기타 주형관련 부속품

3. 열처리산업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915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50101	공업용 노
				29150103	전기로
				29150900	노 부속품 및 부품

4. 표면처리산업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2049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20499210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25922	도금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25929100	기타 금속처리 제품
2622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1	인쇄회로 기판 제조업	26221101	페놀동박적층판
				26221102	에폭시동박적층판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9404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2929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 용 기계 제조업	29299104	금속 표면처리기

5. 소성가공산업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2591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5911100	분말야금제품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2101	보통강 단조물
				25912102	특수강 단조물
				25912109	기타 철강 단조물
				25912201	스테인리스 단조물
				25912202	알루미늄 단조물
				25912203	동 단조물
				25912209	기타 비철금속 단조물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5913101	자동차용 프레스 가공품
				25913105	기타 프레스 가공품
2922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2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23101	액압프레스
				29223102	기계프레스
				29223801	금속 단조기
				29223802	금속 일반기
				29223803	나사전조기
				29223804	금속선 가공기
				29223809	기타 금속성형기계
				29223900	금속성형기계의 부품

6. 용접접합산업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2049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3101	천연 접착제
				20493102	합성수지 접착제
2229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2291102	접착테이프
2413	철강환 제조업				
2429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90800	기타 1차 비철금속제품
2512	금속탱크, 저장조 및 유사용기 제조업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2513	핵반응기 및 중기발생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중기발생기 제조업		
259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999201	용접봉
2622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9301	아크 용접기
				28909302	저항 용접기
				28909309	기타 전기용접기

2919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99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99101	가스 용접 및 절단기
				29199102	기타 용접기
2927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1102	반도체 조립 장비
				29271103	칩마운터
3012	자동차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111	선박 건조업				
3120	철도장비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191	전투용 차량 제조업				

비고

1. 분류와 분류번호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2. 위 표에 포함된 업종이라도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지 아니한 업종은 제외한다.

③ 부품·소재산업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품·소재” 관련 산업

구 분	적용범위(부품·소재)	품목코드
섬유제품제조업 (17)	섬유방적사(천연원료를 제외하고, 기타 방적사는 무기질 섬유사 및 텍스처 사등 가공사에 한한다)	1710
	섬유직물(특수직물 및 기타직물은 무기질 섬유직물에 한한다)	1720
	염색·가공된 섬유사 및 섬유직물(호부, 기타 섬유염색 및 정리 가공품을 제외한다)	1740
	부직포 및 펠트	17993
	산업용 특수사 및 코드직물	17994
	기계용 및 기타 공업용 섬유제품	17999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21)	공업용 기타 종이 및 판지	21129
화합물 및 화학 제품 제조업(24)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유도체에 한한다)	24111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유도체 및 화합물에 한한다)	2411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유도체 및 화합물에 한한다)	24129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2413
	합성고무	2415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24152
	기초의약품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2421
	농약 원제 및 중간체	24312
	공업용 도료 및 관련제품	24321
	공업용 인쇄잉크	24323
	계면활성제	24331
	공업용 사진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24342
	공업용 방향유 및 관련제품	24392
	접착제 및 젤라틴	24393
	공업용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24399
화학섬유	2440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5)	타이어 및 튜브	25111
	공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25191
	공업용 기타 고무제품	25199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25211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관	25212
	극세사 합성피혁	25213
	기계장비 조립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	2524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	공업용 박판유리(두께 1.5mm 이하에 한한다)	26111
	공업용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26121
	판유리 가공품	26122

구 분	적용범위(부품·소재)	품목코드
	기타 공업용 유리제품 공업용 도자기(파인 세라믹을 포함한다) 구조용 정형 내화제품(전주내화물에 한한다) 기능성석회(형상 및 물성제어된 제품에 한한다) 연마휠 초미립 비금속광물(평균입경 1.0 μ m 이하에 한한다) 공업용 내화 단열재 탄소섬유 복합소재 비금속광물	26129 26213 26221 26312 26991 26992 26993 26994 26999
제1차 금속산업 (27)	합금철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일반철근, 보통강 형강을 제외한다) 냉간압연 및 압출제품(보통강 냉연강판을 제외한다) 철강선(보통강철선, 아연도철선, 철조망, 철망을 제외한다) 주조한 관연결류 강관(전기용접 보통강관을 제외한다)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 강재(아연도금강판을 제외한다) 그 외 기타 철강제품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철강 주조제품(회주철을 제외한다) 비철금속 주조제품	27112 27121 27122 27123 27131 27132 27191 27199 2721 2722 2731 2732
조립금속제품 제조업(28)	중앙난방 보일러 부품 및 방열기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핵반응기 부품 증기발생기 부품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가정용 압형제품 및 병마 개를 제외한다)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제품(금속인쇄업을 제외한다) 튼 및 호환성공구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스프링 금속제 아크 용접 전극, 선박의 추진기와 블레이드 및 닻, 금속제의 플레시블 튜브, 철강 및 금속의 기타제품	28121 28122 28131 28132 2891 2892 28934 28941 28943 2899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내연기관 및 터빈 펌프 및 압축기 탭, 밸브 및 유사장치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산업용 오븐 및 노 부품	2911 2912 29130 2914 29150

구 분	적용범위(부품·소재)	품목코드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부품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부품 공기조화장치 부품(자동차용은 완제품을 포함한다)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부품 기체여과기 액체여과기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부품 가공공작기계 부품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부품(주형 및 금형은 완제품을 포함한다) 무기 부품 기타 가정용 전열기기 부품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부품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부품	2916 29171 29172 29173 29174 29175 29176 2919 292 293 29400 29511 29519 2952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30)	컴퓨터 기억장치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CRT모니터, 프린터의 완제품을 제외한다) 복사기 부품	30012 30013 3002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3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발전기세트를 제외한다)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절연 금속선 및 케이블 절연 광섬유케이블 일차전지(리튬전지에 한한다) 축전지 전구 및 램프 부품 일반 조명장치 부품 내연기관용 및 차량용 전기장치 전기정보 및 신호장치 부품 자석 및 자석제품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체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부품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기장비 부품	311 312 31301 31302 31401 31402 31510 31521 3191 31991 31992 31993 31994 31999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32)	반도체 및 기타 전자제품 통신기기 및 방송기기 부품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부품(안테나와 마이크로폰을 포함한다)	321 322 323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의료용기기 부품(의료용 가구를 제외한다)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도안 및 제도기구를 제	331 332

구 분	적용범위(부품·소재)	품목코드
제조업(33)	외한다)	
	광섬유 및 광학요소	33321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부품	33322
	기타 광학기기 부품	33329
	시계 부품	3340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4)	자동차용 엔진	34110
	자동차 부품	34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5)	선박 구성부분품	35114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장치물 부품	35202
	항공기 및 우주선의 보조장치 부품	35310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353
	모터사이클 부품	35910
	자전거 및 장애인용 차량 부품	35920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36)	운송장비용 의자	36111

* 품목코드는 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이며,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표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지원정책>중소기업건강관리 코너에 별도 공지

<비 고>

1.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2.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품·소재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3.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부품으로 본다.

4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

지역	전략산업	연고산업
부산	항만물류산업, 기계부품소재산업, 관광컨벤션산업, 영상·IT산업	해양바이오산업, 실버산업, 신발산업, 수산·가공산업, 섬유·패션산업 등
대구	메카트로닉스산업, 전자·정보기기산업, 섬유산업, 생물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안경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전시·컨벤션산업, 출판·인쇄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의료용 기기제조업 등
대전	정보통신산업, 바이오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	영상·게임산업, 웰빙산업(실버벤처산업), 대덕구공예산업, 동구포도주가공산업, 첨단섬유소재산업, 안경산업 등
광주	광산업, 정보가전산업, 자동차·첨단부품소재산업, 디자인·문화산업	김치산업, 한복패션산업, 화훼·원예산업, 떡산업, 금형산업 등
울산	자동차산업, 조선해양산업, 정밀화학산업, 환경산업	울산농산물, 울산축산업, 산악·산업·해양관광산업 등
강원	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신소재·방재·플라즈마산업, 관광문화산업	생명농어업, 건강채소·화훼산업, 토종동물산업, 목재·산림산업, 유기농업, 한방·약초산업, 기능성식품, 수산가공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신발부품관련 산업 등
충북	바이오산업, 반도체산업,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바이오농업, 석회석신소재산업, 옥천묘목, 옷산업, 에코세라피건강산업, 약초산업, 태양광산업, 보은문화산업 등
충남	전자·정보기기산업,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 첨단문화산업, 농·축산바이오산업	금산인삼산업, 보령머드산업, 공주자카드섬유산업, 계룡군문화엑스포, 청양칠갑산그린투어, 서산육쪽마늘일류화사업, 예산사광가공·유통산업 등
전북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생물산업, 방사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 산업,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	익산귀금속·보석산업, 익산니트산업, 남원옷칠산업, 순창장류산업, 남원목기·허브산업, 진안홍삼·한방산업, 고창복분자산업, 임실유가공산업 등
전남	생물산업, 신소재·조선산업, 물류산업, 문화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부품·소재	기능성식품산업, 토종약초생산·가공업, 나비디자인·천연염색산업, 도자기(삼강청자)산업, 전통애견(진도개)산업, 양식어업, 수산물가공및저장처리업, 차류가공업, 과일,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
경북	전자·정보기기산업, 신소재·부품산업, 생물·한방산업, 문화·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섬유기계산업, 한방산업, 인삼가공산업, 문화축제이벤트산업, 농산물가공·시설채소산업,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등
경남	지식기반기계 산업, 로봇 산업, 지능형 홈 산업, 바이오 산업	Silk산업, 석재가공산업, 축산사료유통산업, 농차가공산업, 약초·자연건강식품산업, 마늘가공산업, 진주가공산업, 양파산업, 치과의료산업, 고령토 산업, '지역정보포털'의 경남지역 향토자원 중 특산물을 활용한 산업 등
제주	관광산업, 건강·뷰티 생물산업, 친환경농업생명산업, 디지털콘텐츠산업	축산업, 수산업, 스포츠산업, 향토음식산업, 화훼산업 등

5 지식서비스산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8565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901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6] 문화콘텐츠산업

구 분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출 판	58111 58112 58119 58121 58122 58123 58190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만화 출판업 기타 서적 출판업 신문 발행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공연	59201 59202 90110 90121 90122 90123 90131 90132 90191 90192 90199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녹음시설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연극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 기타 공연단체 공연 예술가 비공연 예술가 공연 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게 임	58211 58219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비디오 및 애니메이션	59111 59112 59113 59120 59130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방송·광고	59114 59120 59130 60100 60210 60221 60222 60229 71310 71391 71392 71393 71399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 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광고 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광고매체 판매업 광고물 작성업 그외 기타 광고업
캐 릭 터	73201 73202 73203 73209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기타 전문 디자인업

7] 바이오산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C10	식품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40	기타 작물 재배업
01299	그외 기타 축산업
1061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원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1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412	농약제조업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2222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 제조업
22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929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3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 위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바이오산업에 해당되는 기업(바이오산업 해당여부는 진단기관 또는 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 바이오산업 : 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과 서비스로 가공·생산하는 산업

8]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구 분	적 용 범 위
융복합산업	<p>○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 또는 기업이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p> <p>① 농공상 융합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하여 농공상 융합분야로 협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농림수산식품부 선정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p>② 농공상 융합기업 이외의 융복합산업 :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융복합산업으로 인정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p>
프랜차이즈산업	<p>○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상 가맹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가맹사업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한 업체(가맹본부)에 한함</p> <p>* 가맹사업 해당 요건 :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②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③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④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 지급, ⑤ 지속적인 거래 관계(가맹사업법 제2조제1호)</p>

9] 제조업 적합업종 지정 품목

업종명 (2단위)	품목수	품 목 명
식료품 제조업	20	순대, 청국장, 어묵, 고추장, 된장, 간장, 김치, 햄버거빵, 도시락, 떡, 김, 두부, 옥수수식용유, 옥수수정제유, 단무지, 국수, 냉면, 당면, 앙금류, 기타곡물가루(메밀가루)
음료제조업	7	막걸리, 원두커피, 녹차, 홍차, 울무차, 유자차, 기타가공차
섬유제품제조업	1	기타가공사
의복, 복색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	맞춤양복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	골판지상자, 판지상자 및 용기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	기타인쇄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0	세탁비누, 부식억제제(수처리제), 자동차용 부동액, 유기계면활성제, 수소·질소·산소·이산화탄소·아세틸렌가스·아르곤가스충전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	플라스틱병, 기타플라스틱포장용기, 재생타이어, 플라스틱 봉투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기타 판유리 가공품, 기타 안전유리, 레미콘, 아스콘, 생석회
1차 금속 제조업	1	아연분말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3	주조 6개 품목, 단조 7개 품목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	DVR, 비디오 도오폰, 차량용 블랙박스
전기장비 제조업	7	절연전선, LED등, 송배전변압기, 기타 개폐 및 보호관련 기기,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아크용접기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8	플라스틱금형, 프레스금형, 에어핸드링유니트, 팬코일유니트, 향온향습기, 냉각탑, 냉동 냉장 쇼케이스, 주차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	자동차 재제조부품
합 계	84	

<별표 4>

기업건강 상담신청 및 접수처

지방중소기업청

지 역	담당자 연락처	e-mail
서울청	02-2110-6308	chaesr38@smba.go.kr
부산·울산청	051-601-5109	yoobk21@smba.go.kr
대구·경북청	053-659-2209	jumong@smba.go.kr
광주·전남청	062-360-9113	young4611@smba.go.kr
경기청	031-201-6906	willhope@smba.go.kr
인천청	032-450-1115	pkbzzz@smba.go.kr
대전·충남청	042-865-6193	clotholove@smba.go.kr
강원청	033-260-1613	cms1022@smba.go.kr
충북청	043-230-5325	kyc0922@smba.go.kr
전북청	063-210-6414	musell@smba.go.kr
경남청	055-268-2566	jskang@smba.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 역	지점명	담당자 연락처	e-mail
서울	서울지역본부	02-6678-4134	hyunjong@sbc.or.kr
	서울동남부지부	02-2156-2207	yit83@sbc.or.kr
	서울북부지부	02-769-6814	sykim@sbc.or.kr
부산·울산	부산지역본부	051-630-7404	leesj55@sbc.or.kr
	부산동부지부	051-712-9677	mendd@sbc.or.kr
	울산지역본부	052-703-1123	mhchoi@sbc.or.kr
대구·경북	대구지역본부	053-601-5298	imyoji@sbc.or.kr
	경북지역본부	054-476-9324	jjchoi@sbc.or.kr
	경북동부지부	054-223-2046	cbjang@sbc.or.kr
	경북남부지부	053-212-3332	jys2226@sbc.or.kr
광주·전남	광주지역본부	062-600-3023	seongmini@sbc.or.kr
	전남지역본부	061-280-8041	dyjeong@sbc.or.kr
	전남동부지부	061-724-1044	lkslim@sbc.or.kr
	제주지역본부	064-751-2053	yhyoon@sbc.or.kr
경기	경기지역본부	031-259-7913	jh0817@sbc.or.kr
	경기동부지부	031-628-6896	jiwonkim@sbc.or.kr
	경기서부지부	031-496-1085	yse0926@sbc.or.kr
	경기북부지부	031-920-6733	naya2150@sbc.or.kr
인천	인천지역본부	032-450-0532	johyunduk@sbc.or.kr
	인천서부지부	032-450-0573	parang@sbc.or.kr
대전·충남	대전지역본부	042-866-0142	ksw@sbc.or.kr
	충남지역본부	041-621-3683	wgseo@sbc.or.kr
강원	강원지역본부	033-259-7635	ugdesign@sbc.or.kr
	강원영동지부	033-655-8876	puby81@sbc.or.kr
충북	충북지역본부	043-230-6815	risklove@sbc.or.kr
	충북북부지부	043-841-3613	kchiyong@sbc.or.kr
전북	전북지역본부	063-210-9926	hsh@sbc.or.kr
	전북서부지부	063-460-9822	joywin@sbc.or.kr
경남	경남지역본부	055-212-1385	lsj78@sbc.or.kr
	경남동부지부	055-310-6616	smj@sbc.or.kr
	경남서부지부	055-756-3063	leeyounwoo@sbc.or.kr

□ 신용보증기금

지 역	지점명	담당자 연락처	e-mail
서울	기업지원부	02-710-4654	pioneer@kodit.co.kr
	특화사업영업본부	02-710-4155	trustjs@kodit.co.kr
	서울서부영업본부	02-2077-6662	kdjung@kodit.co.kr
	마포지점	02-710-4526	lkj75@kodit.co.kr
	영등포지점	02-2165-5604	cchum@kodit.co.kr
	제주지점	064-740-9422	yhyoo@kodit.co.kr
	광화문지점	02-311-4213	jeon1118@kodit.co.kr
	구로지점	02-2107-4222	khkg@kodit.co.kr
	남대문지점	02-3709-7023	pitt7@kodit.co.kr
	서울디지털지점	02-2109-4732	ochangs@kodit.co.kr
	강서지점	02-3660-1422	sjpark@kodit.co.kr
	김포지점	031-980-4923	bcchun@kodit.co.kr
	고양지점	031-909-6132	kgb@kodit.co.kr
	방배지점	02-3489-5212	sichoo@kodit.co.kr
	과주지점	031-956-3212	flood@kodit.co.kr
	서귀포지점	064-763-8063	sjchin@kodit.co.kr
	서울동부영업본부	02-2141-3303	hikwon@kodit.co.kr
	동대문지점	02-2250-5232	hiickr@kodit.co.kr
	광진지점	02-2204-6224	smoonk@kodit.co.kr
	강남지점	02-2141-3221	hjchung@kodit.co.kr
	강북지점	02-3499-7212	hjyoo@kodit.co.kr
	삼성지점	02-2194-2923	jsyim@kodit.co.kr
	의정부지점	031-828-1722	lwcybm@kodit.co.kr
	강동지점	02-2041-9212	eun@kodit.co.kr
	구리지점	031-560-6612	hsyoo@kodit.co.kr
	테헤란로지점	02-3420-4222	lsw108@kodit.co.kr
	하남지점	031-790-9613	nkuk@kodit.co.kr
	송파지점	02-2140-8513	kmass92@kodit.co.kr
양재지점	02-3460-5422	leoksy@kodit.co.kr	
포천지점	031-543-7694	kcgf3279@kodit.co.kr	
부산·울산	부산경남영업본부	051-605-3122	jwansup@kodit.co.kr
	부산지점	051-605-3021	sc100@kodit.co.kr
	사상지점	051-310-9622	ink1207@kodit.co.kr
	울산지점	052-226-7822	sunghee@kodit.co.kr
	동래지점	051-580-4213	kdals@kodit.co.kr
	사하지점	051-200-9622	sjc444@kodit.co.kr
	부산중앙지점	051-660-5023	youngho@kodit.co.kr
	녹산지점	051-974-6622	higher15@kodit.co.kr

대구·경북	대구경북영업본부	053-430-8917	candy427@kodit.co.kr
	대구지점	053-430-8822	jchang@kodit.co.kr
	대구서지점	053-560-5022	esko@kodit.co.kr
	포항지점	054-271-6412	jhbae@kodit.co.kr
	구미지점	054-450-2523	evision@kodit.co.kr
	대구동지점	053-757-5813	parky77@hanmail.net
	대구북지점	053-350-8823	probasser@korea.com
	성서지점	053-589-6513	brave2me@kodit.co.kr
	경산지점	053-810-0912	kangsj@kodit.co.kr
	안동지점	054-840-8613	khh014@kodit.co.kr
	영주지점	054-639-1512	sbkim@kodit.co.kr
	경주지점	054-749-5511	horays@kodit.co.kr
	칠곡지점	054-975-3296	lhy@kodit.co.kr
광주·전남	호남영업본부	062-607-9184	smskcb@nate.com
	광주지점	062-607-9112	lwtak@kodit.co.kr
	여수지점	061-640-2624	steinee@kodit.co.kr
	목포지점	061-280-9122	ijmoon@kodit.co.kr
	광주남지점	062-600-1522	kojh@kodit.co.kr
	순천지점	061-729-1312	sokim@kodit.co.kr
	광산지점	02-710-4589	ahnjjang@kodit.co.kr
	광주북지점	062-520-2022	yhcho@kodit.co.kr
경기	경기영업본부	031-230-1563	kitty@kodit.co.kr
	수원지점	031-230-1522	jqkim@kodit.co.kr
	안양지점	031-389-9712	bigtiger@kodit.co.kr
	성남지점	031-725-5552	pwwoo@kodit.co.kr
	평택지점	031-650-0822	jhk0517@kodit.co.kr
	이천지점	031-630-0112	eport@kodit.co.kr
	용인지점	031-288-1822	johjy@kodit.co.kr
	군포지점	031-450-6413	ewjung@kodit.co.kr
	화성지점	031-350-9323	gogetter@kodit.co.kr
	경안지점	031-799-0213	thebest1@kodit.co.kr
	화성서지점	031-8059-8514	mhbbae@kodit.co.kr
	오산지점	031-371-6114	jjhyun@kodit.co.kr
인천	인천영업본부	032-450-1673	wjh@kodit.co.kr
	인천지점	032-880-3022	skp@kodit.co.kr
	반월지점	031-490-0422	sunkist@kodit.co.kr
	인천중앙지점	032-450-1623	kkn@kodit.co.kr
	부평지점	032-500-2722	kwhan@kodit.co.kr
	안산지점	031-412-0523	hongrok@kodit.co.kr
	남동지점	032-810-5223	bang@kodit.co.kr
	부천중앙지점	032-650-6523	sch4153@yahoo.co.kr
	시화지점	031-488-3213	chunja75@kodit.co.kr
	인천서지점	032-580-1422	knhtr@kodit.co.kr
	시흥지점	031-489-5913	baedol2@kodit.co.kr

대전·충남	충청영업본부	042-539-5606	sunyoung@kodit.co.kr
	대전지점	042-250-2023	dkkim77@kodit.co.kr
	천안지점	041-550-8022	hicha@kodit.co.kr
	서산지점	041-661-5222	oasis001@kodit.co.kr
	대전중앙지점	042-539-5643	sunjj7@kodit.co.kr
	대덕지점	042-620-5312	victoryi@kodit.co.kr
	아산지점	041-537-7213	starwars@kodit.co.kr
	보령지점	041-936-9161	captkidd@kodit.co.kr
강원	서울동부영업본부	02-2141-3303	hikwon@kodit.co.kr
	춘천지점	033-250-2512	jyleem@kodit.co.kr
	강릉지점	033-650-8023	tongsok@kodit.co.kr
	원주지점	033-749-1312	hdj@kodit.co.kr
	속초지점	033-638-0163	jsj@kodit.co.kr
	동해지점	033-531-9093	halul@kodit.co.kr
충북	충청영업본부	042-539-5606	sunyoung@kodit.co.kr
	청주지점	043-261-9332	kennykim@kodit.co.kr
	충주지점	043-840-1522	tkjeong@kodit.co.kr
	증평지점	043-820-2505	hckwon@kodit.co.kr
	제천지점	043-645-9135	okman@kodit.co.kr
전북	호남영업본부	062-607-9184	smskcb@nate.com
	전주지점	063-230-2522	wmrhee@kodit.co.kr
	군산지점	063-460-1522	hexis93@kodit.co.kr
	익산지점	063-830-3322	ononon@kodit.co.kr
	정읍지점	063-531-1615	kimjm@kodit.co.kr
경남	부산경남영업본부	051-605-3122	jwansup@kodit.co.kr
	창원지점	055-269-0212	dreamkh@kodit.co.kr
	진주지점	055-760-7623	saaaw@kodit.co.kr
	마산지점	055-240-5923	nana389@kodit.co.kr
	김해지점	055-320-2723	jjs1977@kodit.co.kr
	통영지점	055-640-6512	ssbyun@kodit.co.kr
	양산지점	055-371-3113	mschang@kodit.co.kr

□ 기술보증기금

지 역	지점명	담당자 연락처	e-mail
서울	서울본부	02-3215-5910	yuhh@kibo.or.kr
	종로기평	02-738-7801(810)	rwtksk1@kibo.or.kr
	구로기평	02-6124-6404	meyihs@kibo.or.kr
	가산기평	02-818-4310	765@kibo.or.kr
	의정부기평	031-820-0340	393@kibo.or.kr
	강남본부	02-2016-1350	jhkim@kibo.or.kr
	서초기평	02-3476-7265(110)	864@kibo.or.kr
	송파기평	02-3400-7910	ksson@kibo.or.kr
	성남본부	031-750-4810	mchung@kibo.or.kr
부산울산	부산본부	051-606-7681	wonmoon@kibo.or.kr
	동래기평	051-517-6070(201)	jyd@kibo.or.kr
	사상기평	051-320-3420	kjc1410@kibo.or.kr
	사하기평	051-250-7802	549@kibo.or.kr
	울산기평	052-268-8721(301)	kyd@kibo.or.kr
	녹산기평	051-832-0460(101)	354@kibo.or.kr
대구경북	대구본부	053-251-5631	jinseo@kibo.or.kr
	대구서기평	053-652-1861(101)	1534@kibo.or.kr
	대구북기평	053-356-0421(101)	e00636@kibo.or.kr
	구미기평	054-455-7881(101)	332@kibo.or.kr
	포항기평	054-275-3961(201)	716@kibo.or.kr
광주전남	광주본부	062-360-4610	parkume@kibo.or.kr
	제주출장소	064-727-0271(100)	705@kibo.or.kr
	광주서기평	062-941-6833(101)	341@kibo.or.kr
	목포기평	061-284-0394(101)	873@kibo.or.kr
	순천기평	061-729-9333(337)	842@kibo.or.kr

경기	수원본부	031-8006-1560 (560)	1444@kibo.or.kr
	안양기평	031-459-2071(601)	dckwon@kibo.or.kr
	안산기평	031-401-0260(401)	ddol@kibo.or.kr
	시화기평	031-496-5920	542@kibo.or.kr
	평택기평	031-656-7221(101)	bool@kibo.or.kr
	화성기평	031-366-4411(101)	942@kibo.or.kr
인천	인천본부	032-830-5610	lovepark@kibo.or.kr
	인천중앙기평	032-420-3510	373@kibo.or.kr
	부평기평	032-623-6140(101)	james206@kibo.or.kr
	부천기평	032-327-1451(210)	1531@kibo.or.kr
	일산기평	031-931-7210	lsdcjm@kibo.or.kr
	김포기평	031-986-2053(101)	parkjgu@kibo.or.kr
대전충남	대전본부	042-483-7451(630)	jskim@kibo.or.kr
	대전동기평	042-254-6457(101)	cumaeng@kibo.or.kr
	천안기평	041-629-5930	706@kibo.or.kr
	아산기평	041-538-5921	1118@kibo.or.kr
강원	춘천기평	033-241-7161(201)	jee@kibo.or.kr
	원주기평	033-730-8320	ykle5@kibo.or.kr
	강릉기평	033-642-1021(101)	ilho@kibo.or.kr
충북	청주기평	043-290-9540	783@kibo.or.kr
	충주기평	043-842-1591(101)	302@kibo.or.kr
전북	전주기평	063-270-9810	519@kibo.or.kr
	익산기평	063-443-2151(200)	dookang@kibo.or.kr
경남	창원본부	055-210-4010	1594@kibo.or.kr
	진주기평	055-750-1110	317@kibo.or.kr
	김해기평	055-330-2111	876@kibo.or.kr
	양산기평	055-387-6571(201)	795@kibo.or.kr

【별지 제1호】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

* 식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기업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자	년	월 일
소재지 (□본사□공장)	전화/팩스번호	() -	() -
주생산품목	홈페이지		
매출액	백만원	종업원수	명
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 () -
	E-mail:		휴대폰: - -
기업 애로분야	* 해당하는 기업 애로 분야에 표시(✓)하고, 기업현황 및 기술경영 애로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자금	<input type="checkbox"/> 보증	<input type="checkbox"/> R&D/정보화
	<input type="checkbox"/> 기술경영지원	<input type="checkbox"/> 인력/연수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마케팅
	<input type="checkbox"/> 사업전환/M&A	<input type="checkbox"/> 기타	
표준산업분류번호	기진단 여부	(○, ×)	투입일수 MD
진단관리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중소기업 건강진단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진단기관장 및 지원기관장 귀하

온라인 재무제표 제출 안내 : 귀사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신고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제출 사이트 : <http://www.sbfind.co.kr>

- 문의 : 02)3279-6500 이메일 : find@kedkorea.com

첨부서류	1. 기업현황 및 기술·경영 애로사항 2. 건강진단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3.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4.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수수료 없음
진단기관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국세납세증명서 4. 지방세납세증명서 5. 공장등록증명서 6. 특허등록원부 7. 실용신안등록원부 8. 디자인등록원부 9. 상표등록원부 10. 벤처기업확인서 11. 메인비즈확인서 12. 이노비즈확인서 * 6~12번은 필요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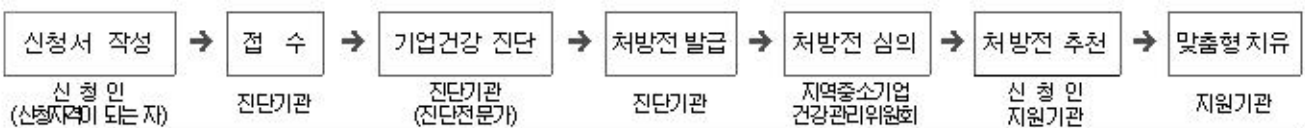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진단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210mm×297mm [백상지 80g/㎡]

[붙임 1]

[기업명] 기업현황 및 기술경영 애로사항

□ 회사연혁

년 월	주 요 내 용 (설립, 상호/대표자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 매출 및 직원 현황

구 분		최근 3개년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백만원, 명)						
		20 년	20 년	20 년	20 년		20 년	20 년
					()월 현재	년간		
매 출	총매출액							
	수출액							
직 원	총인원							
	기술/생산직							

□ 주요 생산제품(상품 및 서비스) 개요

제품용도 및 특성 (상품 및 서비스 주요내용)	
제품생산공정도	* 주제품에 대해 기재하며, 비제조업의 경우 서비스 흐름도를 작성
시 장 상 황 (시장규모, 주요 수요처, 경쟁업체 현황 등)	
기술품질경쟁력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 기술, 품질, 가격 비교)	
수요전망 및 판매계획	

* 항목별 별지 사용 가능

기술/ 경영지원	
인력/ 연수	
사업전환 /M&A	
기 타	

⑥진단거절기업	진단기관에서 신청·접수가 반려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해당여부(단, 6개월 이전에 반려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예외)	Y / N
⑦휴·폐업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해당여부	Y / N
⑧세금 체납	세금(국세 또는 지방세)을 체납중인 기업 해당여부	Y / N
⑨신용거래 불량기업 등록 업체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해당여부	Y / N
⑩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임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해당여부	Y / N
⑪매출액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2년 연속 매출액 50% 이상 감소 기업 해당여부	Y / N
⑫자기자본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해당여부	Y / N
⑬연체일수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기업 해당여부	Y / N
⑭연체횟수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해당여부	Y / N

※ 패스트트랙 적용기업, 구조조정 중소기업인 경우에 해당되는 부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내 용	체 크
①구조조정 대상 기업 여부	은행권의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 B, C, D등급에 해당 됩니까? ※ 확인방법 : 주채권은행의 추천 공문 또는 전화로 확인 ※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등급)	Y / N
②채권금융기관 의결 여부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에서 귀 사에 대해 ‘중소기업건강 진단신청 의결’ 하였습니까?	Y / N

※상기 작성한 자가진단표와 진단신청기관의 조희사실이 다를 경우, 신청·접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기업명 :

대표자 : (서 명)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진단기관(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귀중

□ 본인은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 및 제반서류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등 금융정보, 정책자금 신청 이전 및 이후 기업신용정보 포함)를 수집, 이용, 조회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중소기업 건강관리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 맞춤형 치유 지원기관·중소기업건강관리위원회),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게 제공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중소기업 건강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에 관한사항

- 수집·이용·제공·조회 목적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중소기업 건강관리 관련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중기청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 정보로 활용,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치유 또는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bizdoctor.go.kr>),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 및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에 공개
- 수집·이용·제공·조회 정보 :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분야별 사업계획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등 금융정보, 정책자금 신청 이전 및 이후 기업신용정보 포함), 시설자금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전자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등
-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신용정보업자(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중소기업 건강관리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 및 중소기업건강관리위원회)
-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실행 시까지(중기청 통합관리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월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건강관리 관계기관, 위 기관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건강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제공·조회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위 기관에 중소기업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 및 제반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건강관리 맞춤형 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건강관리 맞춤형 사업 추천 취소,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체명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 하고 동의 하였습니다.
- * 신용정보업자를 통한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진단기관(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귀중

□ 중소기업 건강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과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중소기업 건강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거래 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채권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수집·이용할 항목
 -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능력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의 신용도 판단 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기업개요표 등에 기재된 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 학력, 수상경력 등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기관의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단기관, 공동진단기관 및 맞춤형 치유 지원기관과의 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 제공·조회대상 기관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제공·조회됩니다.
 -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 제공·조회 목적 : 중소기업 건강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제공됩니다.
-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 당좌) 예금 등
 -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실행 시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건강관리 관계기관, 위 기관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건강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제공·조회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고유식별 정보동의	본인은 위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20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_____
동의자 성명 : _____ (인)

※ 「금융감독원-전국은행연합회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표준(안)」에 따라,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위 기관이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등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류 작성요령

1. 건강진단 신청서

◦ 기 업 명	상호 전부를 기재(예 : (주)○○○, △△(주), (유)○○○, □□기업)
◦ 설립일자	법인기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재(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개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 소 재 지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 기재
◦ 매 출 액	최근결산년도를 기준으로 기재
◦ 종업원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일용직 제외)으로 기재
◦ 기업애로분야	* 기업 애로분야 체크할 경우에는 붙임 1의 서식(기업현황 및 기술·경영 애로사항)의 기술·경영애로사항의 분야 및 주요 애로사항을 필히 작성하여야 함 * R&D/정보화를 체크한 경우중 기술개발자금(R&D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건강진단 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 음영색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진단기관에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표준산업분류번호, 기 진단여부, 투입일수, 진단관리 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를 작성함
◦ 신 청 인	대표이사 자서 또는 명판 날인 후 법인(개인)인감 날인

2. 기업현황 및 기술·경영 애로사항

◦ 입력란이 모자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 연 력	설립, 대표자상호업종 변경, 자본증자, 공장신축, 이전 등 기업의 주요사항을 기재
◦ 매출 및 직원현황	· 최근 3개년 수출실적과 총매출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향후 3개년 실적 전망을 기재하며, 신청서 작성 전월말일현재 기준으로 작성(다만, 매출실 적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함) ·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일용직 제외)으로 기재
◦ 자 금	정책자금 필요사유*와 융자신청금액(시설 또는 운전자금), 자금필요시기, 시설 자금 또는 운전자금 소요내역, 담보종류, 융자기관을 기재 * 정책자금(신규융자, 융자금 상환유예)이 필요한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 보 증	신용보증(기술보증 또는 지역신용보증) 필요 사유*와 보증기관, 보증필요금액 (시설 또는 운전자금 보증), 보증필요시기, 보증소요내역, 대출기관을 기재 * 보증(신규보증 또는 보증만기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p>◦ R&D·정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 창업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첫걸음, 도약), 제품·공정 개선사업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하는 기술개발사업 1개를 기재하고, 별지 제11호 서식 「건강진단 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단기관에 제출 - 생산 공정의 정보화시스템 도입(뿌리산업에 한함)이 필요한 경우에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내용 및 효과를 상세히 기재
<p>◦ 국내외 마케팅</p>	<p>국내외 거래선(판매처, 바이어) 발굴애로, 국내외 시장정보 부족, 국내외 상품 홍보 애로, 해외규격 인증획득 애로 등 국내외 마케팅 역량 부족으로 시장개척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에 기업의 현재 마케팅 준비상황, 마케팅 추진계획 및 마케팅 관련 애로내용을 상세히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마케팅 :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 홍보, 공동 A/S 지원, 휴게소 중기제품 전용 Shop, 등 국내유통망 연결, 국내 마케팅 교육 등 지원 * 해외마케팅 : 해외규격인증획득(CE, NTRL 등), 외국어 포장디자인, 해외시장심층조사, 전자무역 서비스, 해외전시회 참가, 다국어 상품페이지 제작,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검색엔진 마케팅, 글로벌 브랜드 개발,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등을 연계 지원
<p>◦ 기술·경영애로</p>	<p>공정혁신 애로, 기업현장 경영애로 등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내용을 상세히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무(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인사/노무(고용/산재보험, 근로계약, 노무관리), 세무/회계(세무회계관리, 재무 분석, 조세법령 검토, 회계감사 자문), 기술/특허(기술동향, 기술자문, 기술보호, 지식재산권 관리, 해외출연 안내), 정보화(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마케팅(마케팅전략, 시장조사, 수출정보, 관세, FTA 안내), 기술개발 애로해소 등 지원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공정개선, 원가절감, 인사/노무/조직운영, 재무, 마케팅전략, 글로벌화 전략 등 전문컨설팅 지원
<p>◦ 인력·연수</p>	<p>인력 부족, 기술(경영)전문 인력양성 애로 등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내용을 상세히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부문(생산직, 사무직, 기술직, 기술개발인력(석박사, 학사전문학사)을 기재하고, 부족부 문별 모집인원 및 월 급여조건을 기재할 것 * 고급기술연구인력 활용,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 테크노닥터사업(퇴직과학기술자 취업), 청년취업인턴제, 산업기능요원제 등을 연계 지원
<p>◦ 사업 전환 및 M&A</p>	<p>사업전환* 또는 M&A를 위한 자금,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사업전환 또는 M&A 추진 계획을 상세히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력 저하 업종의 사업을 축소(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
<p>◦ 기 타</p>	<p>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행정규제, 대기업의 불공정 또는 사업관련 인허가, 공장설립증축이전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에 애로내용을 상세히 기재</p>

3. 사전동의서

◦ 대표자 자서 또는 명판 날인 후 법인(개인)인감 날인

건강진단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과제명	
과제책임자	<input type="checkbox"/> 성명 : <input type="checkbox"/> 전화 : <input type="checkbox"/> 휴대전화 : <input type="checkbox"/> e-Mail :
건강진단 관리번호	※ 건강진단 생략 기업(최근 1년 이내 건강진단 실시기업)에 한해 기재 <input type="checkbox"/> 진단관리번호 : <input type="checkbox"/> 진단일자 : <input type="checkbox"/> 진단기관 :
신청사업	※ 신청기업의 애로기술 분야에 적합한 R&D 사업에 표시(√), 1개 사업만 선택 ※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선택시 (제품개선, 공정개선) 여부 선택(중복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창업 기술개발 <input type="checkbox"/>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input type="checkbox"/> 제품공정개선 / (제품개선, 공정개선)
기업유형	<input type="checkbox"/> 개인기업 <input type="checkbox"/> 법인기업(<input type="checkbox"/> 개인→법인전환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외감) <input type="checkbox"/> 공장등록
기업형태	※ 해당하는 형태에 모두 표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input type="checkbox"/> INNO-BIZ기업 <input type="checkbox"/> MAIN-BIZ기업 <input type="checkbox"/> 녹색인증기업 <input type="checkbox"/> 뿌리기술전문기업 <input type="checkbox"/> GREEN-BIZ기업 <input type="checkbox"/> IMS인증기업 <input type="checkbox"/> 싱글PPM인증기업 <input type="checkbox"/>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input type="checkbox"/> 협업사업계획 승인기업 <input type="checkbox"/>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input type="checkbox"/> 산학협약체결기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기업 <input type="checkbox"/> 여성기업 <input type="checkbox"/> IMS인증기업 <input type="checkbox"/> 모범납세기업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선택시 택1) <input type="checkbox"/> 소상공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소기업
조직현황	<input type="checkbox"/> 기업부설연구소 보유(등록일 : 년 월 일, 소재지 :) <input type="checkbox"/> 연구전담부서 보유(등록일 : 년 월 일, 소재지 :) <input type="checkbox"/> 자체 R&D 전담조직 보유 <input type="checkbox"/> 기타()
인력현황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수 ()명 <input type="checkbox"/> R&D 전담인력 ()명
주요 참여 제한여부 확인	※ 해당하는 부분에 모두 표시(√) <input type="checkbox"/> 국가 R&D 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 <input type="checkbox"/>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 <input type="checkbox"/> 기업의 부도, 휴폐업 <input type="checkbox"/> 채무불이행 <input type="checkbox"/> 부채비율 1,000% 이상 <input type="checkbox"/> 자본전액잠식
지식재산권	※ 본 과제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input type="checkbox"/> 특허등록()건 <input type="checkbox"/> 특허출원()건 <input type="checkbox"/> 실용신안()건 <input type="checkbox"/> 의장 ()건 <input type="checkbox"/> 상표()건 <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건 <input type="checkbox"/> GS ()건 <input type="checkbox"/> 인증()건 <input type="checkbox"/> NET ()건 <input type="checkbox"/> NEP()건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지식재산권에 한함, 법인은 출원인이 법인명, 개인은 출원인이 대표인 경우만 기재
수상실적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기재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기술혁신상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대상 <input type="checkbox"/> 10대 신기술상 <input type="checkbox"/> IR52장영실상 <input type="checkbox"/> 다산기술상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상 <input type="checkbox"/> 특허기술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동등이상 수상()

[붙임]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1. 기술개발 필요성 및 현황

- ※ 기술개발의 현황 및 필요성 중심으로 서술
- ※ 관련기술의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및 향후 전망 등을 서술

。

<표 1> 국내외 주요시장 경쟁사

경쟁사명	제품명	판매가격(천원)	연 판매액(천원)
①			
②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의 제품 등을 기입

2. 기술개발 준비현황

- ※ 신청과제에 대해 그간 준비한 기술개발 관련 내용과 지식재산권 확보방안을 포함하여 서술

。

<표 2> 국내외 관련지식재산권 현황

지식재산권명	지식재산권출원인	출원국/출원번호
① 예) 디자인용 프로그램 개발	(주)우리회사	한국/102009XXXX
②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내용을 기입

3. 기술개발 최종목표

-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내용을 최종산물(제품, 기술 등)로 함축하여 간략히 표현

。

<표 3> 목표달성도 평가지표

주요 성능지표 ¹⁾	단 위	최종 개발목표 ²⁾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업)	가중치 ³⁾ (%)	객관적 측정방법	
					시료 수 ⁴⁾ (n≥b개)	시험규격 ⁵⁾
1. 예) 속도	km	55km 이상	60km(3M, 미국)	20	10	
2. 예) 소음	db	10db 이하	8db(노키아, 핀란드)	15	10	
3.						
4.						
<input type="checkbox"/> 시료수 5개 미만 (n<b개)시 사유 ○						
<input type="checkbox"/> 측정결과의 중빙방법 ○ (예시) 성능지표 1의 경우 해당 공인 시험인증기관(예: OOO연구원)의 시험성적서로 중빙 성능지표 2의 경우 자체평가 수행 ⁶⁾						

- 주1) 주요 성능지표는 정밀도, 최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절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
- 주2) 최종 개발목표는 '특정목표값 이상(min)' 또는 '특정목표값 이하(max)'의 형태로 표현
- 주3) 가중치는 각 주요 성능지표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 주4) 시료 수는 시험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소 5개 이상이어야 하며, 5개 미만 시 사유를 명기
- 주5) 시험규격은 가능하면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예 : KS..., JIS...)하고, 공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주6) 자체평가 수행은 주요 성능지표에 대해서 외부 공인 시험·인증기관을 원칙으로 기재하되, 과제 특성상 주관기관·참여기업·위탁기관 등이 시험(성능평가)을 수행하는 경우 객관적 사유기재

4. 기술개발 내용

※ 개발하고자 하는 주요 핵심기술 위주로 기존 제품(기술)과의 차별성 등 세부적인 개발내용 서술
 ○

<표 4> 수행기관별 업무분장(해당시)

수행기관	주요 담당 업무	기술개발 비중(%)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외주용역처리		
총 계		100%

※ 기술개발 비중이란 전체 기술개발내용을 100%로 하였을 경우에 각 수행기관에서 담당한 업무의 비중을 의미함

5. 연구인력 주요 이력

성 명 (구분)	경력사항			전 공 (학위)	최종학력
	연 도	기 관 명	근무부서/직위		
(과제책임자)	~				
	~				
(핵심개발자)	~				
	~				

※ 구분란에 과제책임자, 핵심개발자(2인 이내) 기입, 참여기업이 있을 경우 참여기업 연구책임자도 추가하여 작성

6.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실적(신청중 포함)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제명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정부 출연금(천원)	참여형태 (주관/참여/ 위탁 등)	과제현황*		
						완료	개발중	신청중
1								
2								

※ 주관기관이 신청시점에서 '과제현황' 중 해당사항에 체크(√) 표시/ 참여기업이 있을 경우 별도로 추가하여 작성

7. 연구기자재·설비보유 현황

구분	연구기자재 및 시설명	규격	공급 가액 (백만원)	구입 년도	용도 (구입사유)	보유기관 (참여형태)
자사보유						(주)우리회사 (주관기관)
	소계					
공동장비 활용						
	소계					

8. 개발기술 활용 및 사업화방안

- ※ 기술개발결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 ※ 제품화 이후의 양산 계획, 방법 및 양산 제품의 마케팅 전략 등 생산 및 관료확보 방안을 객관적으로 서술
-

9. 사업비 구성(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 첫걸음 및 도약과제 작성 제외)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비 내역	현금	현물	계
직접비	인건비	○ 내부인력	- 3,000만원 × 1명 × 6개월 × 30%		
		○ 신규인력	- 2,500만원 × 2명 × 12개월 × 50%		
	연구장비 · 재료비	○ 연구시설·장비비	- 규격 및 수량 단가 등 작성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규격 및 수량 단가 등 작성		
		○ 시작용·시제품· 시험설비 제작경비	- 규격 및 수량 단가 등 작성		
	연구활동비	-			
위탁연구개발비	-				
간접비	간접비	-			
계					

<참고> R&D 사업비 작성요령

※ 사업비 산정은 과제선정 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기술개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비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과대 계상된 사업비는 평가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규정에 맞도록 적정하게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산정 또는 비율제한						
직접비	인건비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th> <th>세부 산정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연봉제 적용기관</td> <td>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td> </tr> <tr> <td>연봉제 비적용기관</td> <td>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td> </tr> </tbody> </table> <p>※주관기관 과제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함 ※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해서 산정가능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월 평균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 내부인력은 현물계상 원칙(단, 기술개발의 대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신청인건비의 50% 이내에서 현금계상 가능) ※ 신규채용은 100% 현금계상 가능 ※ 과제수행에 참여한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기술개발기간 동안의 실지금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다만,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고,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기관의 정규직원은 인건비(외부)로 계상 불가</p>	구분	세부 산정기준	연봉제 적용기관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구분	세부 산정기준						
	연봉제 적용기관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구장비·재료비	<p>○ 연구시설·장비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및 임차료(연구공간 제외) ※ 기보유 기자재 및 시설은 장부가의 20% 이내 현물계상 가능 ※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이내에서 계상 <p>○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임상비용 포함),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p>							
연구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 사무용품비 등 ※ 기술정보수집비 및 전문가 활용비 :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 ※ 국내 출장여비 및 회의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필수 - 회의비 : 사전 원인행위 및 회의록 필수 							
위탁연구개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 할 경우 계상 ※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이내 							
간접비	간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비의 5% 이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자로 임치비, 회계감사비, 연구실 안전·보안관리비 등 						